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1809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1. 10.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9. [redacted]시 B 전 840㎡(이하 '기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5. 3. 25. C에게 기존 토지 중 335㎡ 부분을 매도하고 2015. 6. 5.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2016. 7. 2. D에게 기존 토지 중 나머지 505㎡ 부분을 매도하고 2016. 8. 31.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 1. [redacted]시 E 답 1,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38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11,433,000원, 지방교육세 762,200원, 농어촌특별세 762,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본문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 50% 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기존 토지의 소재지인 김포시 등에 거주하거나 기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데도 그 요건을 갖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못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6. 8. 1.을 기준으로 그 전의 2년 이상 농지인 기존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면서 기존 토지의 소재지인 [redacted]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기간 중 일부기간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광주광역시로 신고한 것은 원고의 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형식적으로만 옮긴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광주광역시로 신고하였던 2012. 10. 18.부터 2015. 8. 6.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본문의 귀농인에 해당하고, 귀농인인 원고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본문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4. 4. 29. ~ 2012. 10. 17.: 김포시 F(이하 생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2012. 10. 18. ~ 2015. 8. 6.: 광주 동구 G

2015. 8. 7. ~ 현재: [redacted]시 F(이하 생략)

2) [redacted]시 H장이 2016. 8. 24.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기존 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17. 3. 23.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원고가 기존 토지에서 건고추, 감자, 들깨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5. 22.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기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redacted]시 I 전 248㎡를 영농 목적으로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2016년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토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3) J협동조합 장곡지점장이 2018. 4. 12.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는 원고가 2013. 1. 1.부터 2018. 4. 9.까지 비료, 시설원예자재(상추, 열무, 쑥갓, 배추 등 씨앗), 묘목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9. 7. 21.부터 2017. 6. 22.까지 총 61건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는 전남대학교병원, K협동조합 등 광주광역시에서 발급되었다. 원고의 자녀인 L는 2008. 3. 20.부터 2018. 1. 23.까지 광주광역시에서 M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N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나주시에 위치한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제6호증의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취득세 경감대상 해당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제3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하여 기존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요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기간에 계속하여 기존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이나 기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여 왔다는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호 제1항 제2호는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받는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여러 요건 중의 하나로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이 자경농민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면서도 그와 같은 자경농민의 요건의 하나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호 제1항 제2호를 둔 것은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 등에 따른 폐단이나 탈법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제1호에 따른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기존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등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였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9조 제1항은 취득세를 경감받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관하여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 소유자 등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되어 2014. 8. 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취득세를 경감받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관하여 농지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 등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취득세를 경감받는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기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4. 8. 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어 취득세를 경감받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관하여 제3조 제1항 각 호로 정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6. 8. 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이 되는 2014. 8. 1. 이전부터 2016. 8. 1.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기존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10. 18.부터 2015. 8. 6.까지 광주 동구 G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위 기간에 전남대학교병원, K협동조합 등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바가 있으며, 원고의 자녀의 사업장소, 원고의 배우자의 근무지 등 원고의 가족의 생활근거지가 광주광역시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2. 10. 18.부터 2015. 8. 6.까지의 기간에 그 주장과 같이 기존 토지가 소재하는 [redacted]시 F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갑 제6호증의 13 내지 15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에 [redacted]시 F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6. 8. 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기존 토지의 소재지인 [redacted]시나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기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상시적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본문의 취득세 경감대상 해당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농어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1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제2호),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제3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농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본문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자가 귀농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김포시 F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2015. 8. 7.을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 외의 지역인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8. 7.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존 토지를 경작하는 등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본문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사 장원정

판사 정유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8. 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자경농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48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
2.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